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1,423,758,998	42,712,770
일반회계	1,245,616,309	37,368,489
특별회계	178,142,689	5,344,281
공기업특별회계	160,224,620	4,806,73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7,544,172	1,426,32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4,725,031	1,341,75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7,955,417	2,038,663
기타특별회계	17,918,069	537,54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17,000	9,51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734,371	172,03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40,797	118,224
수질개선특별회계	7,331,937	219,95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93,964	17,81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234,95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1,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